# 탄소와 환경 상품의 거래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 탄소세와 국제 크레딧

탄소크레딧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가장 새로운 상품입니다. 크레딧은 규제당국이나 구매자의 약속이 이를 인정하는 한도에서만 가치를 가지므로, 그 시장은 법에 기반합니다. 2018년 탄소가격법(Carbon Pricing Act 2018)에 따라 도입된 싱가포르의 탄소세는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량 25,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1] 세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톤당 5싱가포르달러였고, 2024년에 25싱가포르달러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45싱가포르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50~80싱가포르달러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2]

크레딧 거래와의 연결 고리는 상쇄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과세 대상 기업은 적격 국제 탄소크레딧을 사용하여 과세 대상 배출량의 최대 5%까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레딧은 파리협정 제6조의 규칙과 정부가 정한 환경적 건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3] 이 설계는 고품질 크레딧에 대한 국내 규제 수요를 창출합니다. 이로써 싱가포르의 트레이더들은 가까운 곳에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발적 시장과도 연결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제6조에 따른 이행협정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 간에 감축 실적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유치국이 자국 계정에서 상응 조정을 하여 감축분이 한 번만 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이 체계에 따라 양자 이행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가나, 부탄, 페루, 르완다, 태국, 몽골과 체결한 6건의 운영 중인 협정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협정들에 따라 사업은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몽골 관련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에 개시되었습니다.[4]

이 네트워크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기후주간 중 싱가포르는 필리핀과 이행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필리핀이 맺은 최초의 이행협정입니다. 2026년 9월 4일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정부는 이를 싱가포르의 12번째 이행협정이자 아세안 회원국과의 4번째 협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5] 이 협정들은 상대국에서 창출된 크레딧에 자발적 시장의 크레딧이 갖지 못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즉 이 크레딧은 유치국의 승인을 받고, 국가 등록부에 기록되며, 국가 계정에서 조정됩니다.

## 거래소, 마켓플레이스 및 거래 커뮤니티

이 체계를 중심으로 탄소 관련 기업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2023년에 100개가 넘는 기업이 탄소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AirCarbon Exchange와 Climate Impact X 거래소가 포함된다고 보고했습니다.[6] Climate Impact X는 고품질 크레딧을 위한 거래소와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DBS, 싱가포르거래소(SGX), Standard Chartered, Temasek이 설립했습니다.[7] 참여자로는 사업 개발업체, 중개업체, 검증기관, 평가기관, 등록부 운영기관, 그리고 원자재 트레이더의 환경 데스크 등이 있습니다.

원자재 트레이더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이 새로운 시장에 가져옵니다. 탄소크레딧은 석유 1톤처럼 표준화된 단위이지만, 그 가치는 실사가 필요한 속성에 좌우됩니다. 사업의 유형, 발행 연도(빈티지), 방법론, 반전 위험, 유치국의 승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인 등이 그것입니다. 실물 원자재에서 이미 품질, 원산지 및 서류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같은 규율을 크레딧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을 실물 화물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쇄크레딧을 붙여 LNG를 판매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관행은 크레딧의 품질이 의심스러운 경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 탄소크레딧의 법적 성격

싱가포르 법에서 탄소크레딧의 법적 성격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크레딧은 등록부상의 기재 항목이며, 이 등록부는 싱가포르 밖의 등록부 운영기관이 보유하고 그 운영기관의 약관에 따라 규율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이 신탁으로 보유되거나, 담보로 설정되거나, 도산 절차에서 회수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재산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에 관해 유사한 문제를 다룬 바 있으며, 이는 제K편 제I장에서 논의합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전되는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흔히 업계 표준 양식에 기초한 계약 문서에 의존합니다.

금융센터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은행이 크레딧의 법적 지위가 명확한 경우에만 크레딧 재고에 금융을 제공하고 이를 담보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K편 제II장에서는 택소노미와 공시 요건을 포함하여 탄소시장이 자리한 지속가능금융의 더 넓은 체계를 살펴봅니다.

# 주

1. Carbon Pricing Act 2018 (Act 23 of 2018), 2019년 1월 1일 시행. ↩
2.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Carbon Tax” (ncc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온실가스를 연간 “directly emit at least 25,000 tCO2e”하는 시설이 대상임.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Carbon Tax” (위의 자료): “for the first five years from 2019 to 2023” 동안 톤(tCO2e)당 5싱가포르달러, 2024년부터 톤당 25싱가포르달러, “raised to S$45/tCO2e with effect from 1 Jan 2026”, 2030년까지 톤당 50~80싱가포르달러를 목표로 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Carbon Tax” (위의 자료): 2024년부터 기업은 국제 탄소크레딧을 사용하여 과세 대상 배출량의 최대 5%까지 상쇄할 수 있음. “Eligible ICCs used under the carbon tax regime will need to comply with rules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이며, 높은 환경적 건전성을 입증하는 7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함. ↩

4. Singapore Carbon Markets Cooperation, 웹사이트 (carbonmarkets-cooperation.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가나, 부탄, 페루, 르완다, 태국, 몽골과의 운영 중인 이행협정을 열거함. Ministry of Energy,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and Mongolia to open application process for carbon credit projects under bilateral Implementation Agreement”, 2026년 10월 8일 (meti.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통상산업부는 2026년 10월 1일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Prime Minister’s Office, 2026년 7월 22일 발표, pmo.gov.sg): 신청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접수되며, 가나, 부탄, 페루, 르완다, 태국에 이어 신청 절차가 개시된 6번째 협정임. ↩

5.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signs the Philippines’ first Implementation Agreement on carbon credits collaboration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2026년 4월 30일 (현재 meti.gov.sg에 게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마닐라 아세안 기후주간 중 그레이스 푸(Grace Fu) 장관과 DENR 장관 후안 미겔 T. 쿠나(Juan Miguel T. Cuna)가 서명함.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현 Ministry of Energy,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and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ign Implementation Agreement on carbon credits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2026년 9월 4일 (meti.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is is Singapore’s 12th Implementation Agreement on carbon credits collaboration”, 아세안 회원국과의 4번째 협정이며, 그레이스 푸 장관이 서명함. ↩

6. Lee Pak Sing (Enterprise Singapore), *The Business Times*, 2023년 9월 4일, JTC 재게재 (위의 자료): 싱가포르에는 “now has more than 100 of such companies”이며, 여기에는 탄소 거래소 ACX와 Climate Impact X가 포함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Climate Impact X는 2021년 5월 DBS, SGX, Standard Chartered, Temasek의 합작투자로 발표되었음. 2021년 5월 20일자 공동 보도자료 참조. ↩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